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93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진성준·김문수·정일영

허 영 • 위성곤 • 김태년

임오경 • 박홍근 • 주철현

김영환 · 강선우 · 김성환

김주영 · 정준호 · 이재명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관리·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

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 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 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입찰 공고 및 계약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 를 진행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
리 및 제공) ① ~ ③ (생 략)	리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
	자조달시스템(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다)을 이용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잘못이 있
	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
	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
	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